

매년 미국 대사관은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거나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미국 이민을 하려는 수백명의 배우자의 비자 업무를 처리한다. 이 때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는 이민자의 재정 보증인이 되는데, 그는 미국 현지 거주자의 기준과 동일한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거주지라는 것은 간단히 정의할 수는 없으나, 쉽게 설명하자면 한 개인이 매일 살면서 일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있는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공부하는 것처럼 해외에서 한 학기 또는 한 학교의 교육 과정을 모두 마치게 되는 경



이동찬

이민 변호사

니 이를 이용하면 된다.

이민자인 배우자를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이 있다 는 재정 보증은 재정 보증인인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의 지난 몇 년간의 해외소득으로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부부가 미국에 귀국하여 거주지와의 관계가 다시 성립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영사관에서는 이민자 배우자의 미국 비자 인터뷰를 위해 종종 공동 재정보증인을 세우도록 권한다.

공동 재정 보증인이 비자 인터뷰 전에 준비된다면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가 미국에 귀국하여 새 거주지와의 관계를 증명하고 또 공동 보증인을 찾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

시 구직을 하여 받은 첫 번째 급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미국에서 새로 마련한 부동한 임대차 계약서, 한국 입출국 증명서, 미국에 있는 학교 등록,

재정보증: 거주지·세금 보고·현재 소득

우라면 해외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국, 즉 미국 거주지와 계속 왕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교사와 교수가 미국을 떠나 일정 기간 해외 연수, 연구를 하게 될 경우에도 정해진 해외체류 기간은 거주지와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미국 정부나 미국 기업이 해외로 파견하는 피고용인들 역시 본 거주지와 왕래 중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다수의 미국 시민권자들은 해외에 있는 외국 고용주에게 고용되거나 해외에서 거주할 때 미국 귀국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상 그들의 해외 체류기간은 영속적인 것으로 간주해 본래 미국의 거주지와의 관계가 끊기게 된다.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거나 한국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대부분의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가 그러하다.

대부분의 경우 미국 거주지와의 관계가 지속한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한국에서의 고용 계약을 끝내거나, 미국에서 다

기타 비슷한 자료 또는 이러한 자료들을 함께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 이 자료들은 미국 귀국 전이나 미국 귀국 후 신속히 준비할 수 있다.

모든 미국 시민권자들은 국세청에서 특별히 면제해주지 않는 이상 미국 또는 해외에서 거주하거나 일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이민자 배우자를 위한 재정 보증인(시민권자 배우자) 중 혹시 본인이 지난 3년 간 세금보고 대상에서 면제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국세청에 꼭 서면으로 면제 대상의 법 조항을 찾아 본인의 면제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또한 해외에서 취득한 소득의 소득세는 미국 국세청에 제출하는 세금보고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국세청의 컴퓨터 자료를 통해 작년도 세금보고 열람 또는 지난 년도 세금보고 기간 연장의 도움이 필요하면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필리델피아에 있는 국세청으로 연락하도록 정보를 제공하

을 아낄 수 있으니 심사관이 비자 신청인의 인터뷰를 끝낼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거주지와 세금 보고는 시민권자 배우자가 증명해야 하고 공동 재정 보증인은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부족한 소득을 보강해주는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시민권자 배우자는 미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부탁하여 I-864라는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I-864는 재정 보증인이 일정 기간 동안 이민자 배우자의 경제적인 책임을 대신한다는 서류이다.

미국을 떠나 한국에서 일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고 미국으로 돌아와 새 보금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많다. 가족관의 유대관계를 중시하는 이민법을 잘 이용하여 하루속히 미국에 들어오고자 하는 소망을 이루시길 바란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면 되겠다.

(213)291-9980